

에너지관련 세제 개편(안)

- 에너지경제연구원 -

이 자료는 지난 6월 11일에 열린 공청회에서 발표된 내용임.<편집자주>

1. 에너지관련 세제 현황

(1) 조세구조

- 현행 에너지관련세제는 총 4종(특별소비세, 교통세, 교육세, 부가가치세)으로 구성
 - 등유, LPG, LNG에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되고, 휘발유, 경유에는 도로확충채원 조달을 위해 교통세가 부과
 - B-C유, 유연탄, 전력에는 산업경쟁력 및 물가에 미

치는 영향 등을 고려 부가가치세만 부과

- 전력의 경우 발전연료인 B-C유 및 LNG는 세금을 부담

(2) 세수현황

- 97년 에너지 관련세수는 약 9조 9천억원으로 총국세(69조 9천억원)의 14% 수준으로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
 - 미국은 2%, 독일과 호주는 7% 수준(91년)
- 에너지 관련 세수중 석유류의 비중이 89%로 석유류에 편중

에너지원	세 명 (부가세 제외)	세 액	소비자가격대비세율 (부가세포함)
○ 석유류			
• 휘발유	교통세 교육세	591원/리터 교통세액의 15%	0.75
• 경유	교통세 교육세	110원/리터 교통세액의 15%	0.39
• 등유	특별소비세 교육세	60/리터 특별소비세의 15%	0.33
• B-C유	-	-	0.09
• LPG	특별소비세	40원/kg	0.14
○ 석탄			
• 무연탄	-	-	-
• 유연탄	-	-	0.09
○ LNG	특별소비세	40원/kg	0.18
○ 전력	-	-	0.09

(단위: 억원)

	석유	LNG	유연탄	전력	합계
내국세	82,969	3,885	3,460	3,265	93,579
• 특수세	5,340	1,621	-	-	6,961
• 교통세	55,471	-	-	-	55,471
• 교육세	8,618	-	-	-	8,618
• 부가가치세	13,540	2,264	3,460	3,265 ^①	22,529
관세	4,910	210	-	-	5,129
합계	87,879 ^②	4,104	3,460	3,265	98,708
(비중, %)	(89.0)	(4.2)	(3.5)	(3.3)	(100.0)

주: ① 일반 및 산업용 전력 부가가치세 환급후 실징수액
② 석유 수입부과금 10,481억원 별도

- 석유류 세수중 휘발유 비중이 59%로 휘발유의존도가 높음

	휘발유	경유	기타	계
세수(억원)	52,112	14,588	21,179	87,879
(비중, %)	(59.3)	(16.6)	(24.1)	(100.0)

주: 추정치임

주: 1. 모든 에너지원에 대해 가격대비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일반용 및 산업용전력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환급
2. 농어촌 석유류에는 특별소비세/교통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

2. 현행 에너지 관련 세제의 문제점

- 에너지 관련 세제가 세수 확보 위주로 부과·운영되어 에너지 절약, 소비구조 개선기능이 절대적으로 미흡
 - 에너지 관련 세금부과수준 및 세금 감면등이 물가 안정, 에너지다소비형 산업지원 등을 목적으로 결정되어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
 - 농어촌 유류 특소세 및 부가세 감면, 일반용 및 산업용전력 부가세 감면등
- 에너지 관련 조세체계가 복잡하고 형평성이 결여
 - 에너지원별로 상이한 조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세금 부과수준의 차이가 큼
 - 특히 석유류의 경우 특소세가 일반 특소세와 교통세로 이원화되어 부과되고 있으며, 일부 유종에 대해서는 교육세가 특소세의 *Sur-Tax* 형태로 부과
- 세금 부과수준의 차이로 인한 에너지원간 상대가격 왜곡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합리적 소비구조 유도를 저해
 - 휘발유와 경유간의 과다한 세금격차는 수송부문 소비구조 및 투자왜곡을 조장
 - 다목적승합차의 경유화·대형화로 환경저해 가속화
- 에너지 사용에 따른 외부효과의 내부화 기능이 미약
 - LNG 및 LPG에는 부과되고 있는 특소세가 B-C유, 유연탄, 무연탄에는 부과되지 않고 있어 환경오염 가중 및 환경산업 발전을 저해

3. 에너지관련 세제 개편방안

(1) 주요 추진사항

- 가. 개별소비세로서 에너지세 도입
- 에너지에 부과되고 있는 다양한 세금들을 개별소비세인 에너지세로 흡수·통합(부가가치세는 별도)
- 원칙적으로 모든 에너지원에 대해 에너지세를 부과

○ 에너지원별 발열량과 탄소함유량을 기준(50:50)으로 에너지원별 세금부과수준을 결정

	B-C유	등유	LPG	전력	무연탄	유연탄	LNG
발열량 기준	100	87.9	120.2	25.3	45.5	66.7	131.3
탄소량 기준	100	81.5	97.9	0.0	57.1	80.7	95.6
에너지세 부과기준	100	84.0	106.7	10.0	52.5	75.2	109.7

나. 수송용 유류의 주행세 기능강화

- 현행 자동차 보유세 및 주행세 복합체계를 주행세 위주로 전환
 - 한·미 협상 관련 등록세 교육세(1,847억원) 및 농특세(490억원) 폐지 → 이에 따른 세수 감소분은 98.5월 휘발유 탄력세를 상향조정으로 기흡수
 - 자동차 특소세제 개편(3단계 10~20% → 2단계 10~15%)에 따른 세수 감소분(부가가치세 포함 5,847억원)을 주행세로의 전환 추진
- 자동차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경유에너지세로 흡수하여 휘발유·경유간의 세금 격차를 해소

다. 점진적 에너지 세제개편의 추진

- 산업경쟁력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에너지세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향후 5년간 에너지원별 세금을 점진적으로 조정
 - 현재 특소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는 B-C유, 유연탄, 전력에 에너지세를 부과하되 점진적으로 상향조정
 - 반면, LNG·LPG·등유 특소세 및 교육세를 에너지세로 전환하되 부과수준을 점진적으로 하향조정
 - 석탄산업 합리화가 추진중인 만큼 무연탄에 대한 에너지세 부과는 당분간 유예
- 휘발유·경유 세금격차 해소를 위한 경유세율 인상도 향후 5년간 점진적으로 실시

- 휘발유·경유간의 세금격차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축소

	한국	OECD
경유가격대비 세금비중	0.389	0.555
휘발유가격대비 세금비중	0.745	0.705

- 라. 기후변화협약 대비 에너지세 감면제도 도입·시행
- 세계개편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출을 위해 에너지세 감면제도 도입 필요
- 자발적 협약,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저에너지형으로의 업종 전환등 효과적인 에너지절약사업에 대한 에너지세 감면제도 실시
- 에너지세 감면재원으로 부과세인 교육세의 에너지세 흡수로 전단위 세금부과가 불필요한만큼 부과세금을 원단위로 올림 조정방안 등을 활용

(2) 98 에너지세제 개편(안)

가. 에너지원별 세금 및 세수규모

- 특소세, 교통세, 교육세를 에너지세로 통합
- 세금 부과수준
 - 세금 불변 : 휘발유(680원), 무연탄(0)

	세금 부과(원)			세수 규모(억원)		
	현행	개편(안)	증감	현행	개편(안)	증감
· 휘발유(l)	679.65	680	0.35	77,167	77,196	29
· 경유(l)	126.5	157	30.5	24,898	30,869	5,971
· 난방유(l) ^①	69.0	56	△13.0	11,862	10,832	△1,030
· B-C유(l)	0	5	5	0	938	938
· LPG(kg)	40.0	38	△2	3,896	3,706	△190
· 전력(kWh)	0	2	2	0	3,991	3,991
· 무연탄(kg)	0	0	0	0	0	0
· 유연탄(kg)	0	4	4	0	1,960	1,960
· LNG(kg)	40.0	38	△2	4,552	4,328	△224
계				122,375	132,865	10,490

주: ① '98.8월부터 난방유 신규공급에 따라 등유가 난방유로 변경
 ② 발전원료 부과세금의 환급액
 ③ 부가가치세 제외

- 세금 증가 : 경유 24.1%
- 세금 감소 : 등유 △18.8%, LPG △5.0%, LNG △5.0%
- 신규 세금 : B-C유 5원/l, 전력 2원/kWh, 유연탄 4원/kg

○ 세수규모

- 현행 세수(12조 2천억원) 보다 약 1조 증가한 13조 3천억원 수준
- 세수 추가분은 자동차보유세 감면 및 에너지세 감면재원으로 사용

나. 에너지원별 가격변화

	에너지원별 가격(원)			물가 파급효과(%)	
	현행	개편(안)	증감	생산자물가	소비자물가
· 휘발유(l)	963.64	964.03	0.39	0	0
· 경유(l)	432.59	466.14	33.55	0.135	0.015
· 난방유(l)	379.43	365.13	△14.30	△0.027	△0.040
· B-C유(l)	229.25	234.75	5.50	0.019	-
· LPG(kg)	542.60	540.40	△2.20	△0.001	△0.001
· 전력(kWh)	65.26	67.46	2.20	0.083	0.048
· 무연탄(kg)	47.00	47.00	0	0	0
· 유연탄(kg)	61.06	65.46	4.40	0.001	-
· LNG(kg)	427.55	425.35	△2.20	△0.002	△0.003
계				0.208	0.045

주 : 세후 공망도 가격 기준

다. 에너지세 감면제도 도입 실시

- 저에너지형 산업구조전환 유인책으로 에너지세 감면 제도를 도입하여 에너지세 도입에 따른 산업경쟁력 약화 요인을 보완
- 세수추가 확보분중 일부를 저에너지형 산업구조 유인을 위한 에너지세제 감면에 활용
 - 부과 세금의 원단위 조정으로 인한 세수 추가확보분(3850억원) 또는 산업부문으로부터의 세수 확보분(2900억원)을 감면재원으로 활용 가능
- 자발적 협약 목표달성기업, 에너지절약 시설 투자목표

달성기업, 저에너지형으로의 업종 전환기업에 대해 에너지세의 일정분을 환급

- 환급규모 및 구체적인 환급대상은 산업부문 세수부담 및 에너지절약 시책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

※ 덴마크의 경우 에너지세액의 대부가가치비율에 따라 에너지세의 차등환급제를 시행중

(3) 중장기 세제개편 방향

가. 세금부과수준

(단위: 원)

	현행	개편안	최종개편 목 표	증 감	
				98대비	최종목표 대 비
• 휘발유(l)	679.65	680	625*	0.35	△54.65
• 경 유(l)	126.5	157	260*	30.5	133.5
• 난방유(l)	69.0	56	19	△13	△50
• B-C유(l)	0	5	23	5	23
• LPG(kg)	40.0	38	24	△2	△16
• 전력(kWh)	0	2	3	2	3
• 무연탄(kg)	0	0	12	0	12
• 유연탄(kg)	0	4	17	4	17
• LNG(kg)	40.0	38	25	△2	△15

※ 휘발유세율 현 수준유지 및 경유세 상향조정시(260→281원/l) 추가세수 확보 효과 1조억원

나. 에너지원별 가격변화

(단위: 원)

	현행	개편안	최종개편 목 표	증 감	
				98대비	최종목표 대 비
• 휘발유(l)	963.64	964.03	903.53	0.39	△60.12
• 경 유(l)	432.59	466.14	579.44	33.55	146.85
• 난방유(l)	379.43	365.13	324.43	△14.30	△55.00
• B-C유(l)	229.25	234.75	254.55	5.50	25.30
• LPG(kg)	542.60	540.40	525.00	△2.20	△17.60
• 전력(kWh)	65.26	67.46	68.56	2.20	3.30
• 무연탄(kg)	47.00	47.00	60.25	0	13.25
• 유연탄(kg)	61.06	65.46	79.86	4.40	18.80
• LNG(kg)	427.55	425.35	411.05	△2.20	△16.50

주: 세후 공장도가격 기준

4. 향후 추진방향

○ 에너지관련 세제개편은 국내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므로 개편(안)에 대한 관련업계, 소비자등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

○ 추진일정

- 98. 6. 11(목) : 에너지경제연구원 주관으로 공청회 개최
- 98. 6월 중순 : 산업자원부 개편(안) 확정
- 98. 7-8월 : 재정경제부등 관계부처 협의



컨소시엄 (Consortium)

협회·조합·국제자본가연합 등의 일반적 의미를 갖고 있는 용어. 외국의 재정원조 또는 산업지배등을 목적으로 결성된 국제적 대자본의 합동이나 차관을 가리키거나 거액의 유가증권 공동인수조합을 뜻하기도 한다. 대규모 투자자본이 소요되고 위험부담이 매우 큰 유전개발사업에서는 주로 여러 기업이 컨소시엄으로 참가하여 자본조달부담과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